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단41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렉스 담당변호사 한재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변 론 종 결 2024. 9. 1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목포시 D 대 396㎡에 관하여 2022.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목포시 D 대 39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2. 6. 9. 접수 제19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 C으로부터 목포시 D 대 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다(이하 ‘2016. 10. 6.자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C은 원고로부터 매매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C에게 2016. 10. 6.자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6.자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C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20. 5. 29. 해제되었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확정판결(2020가단53133)에 따라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 6.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제3817호로 피공탁자를 ‘C’, 공탁금액 ‘283,472,470원’, 공탁원인사실을 ‘2016. 10. 6.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원 등’으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C은 2020. 11. 1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일부’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와 2022. 6. 9. 접수 제1994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금의 일부 변제로서 효과가 발행하지 않는다. C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에게 수령한 공탁금 283,472,4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C은 원고가 2016. 10. 6.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10년간 임대하여 주기로 하였고, 만약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할 경우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며, 부득이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C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C은 원고에게 약정금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C에 대하여 합계 783,472,470원(= 부당이득반환 채권 283,472,470원 + 약정금 50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에 관하여

C은 원고에게 783,472,470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로 인하여 C의 적극재산은 시가 약 220,000,000원인 광명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광명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만이 남게 되었는바, C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2016. 10. 6.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C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말소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C은 원고에게 500,000,000원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C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사해행위 등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 액수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을 비교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6, 11, 12호증, 을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합8976호로 C을 상대로 500,000,000원의 약정금, C이 수령한 공탁금 283,472,4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은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잔여 채권 17,462,943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같은 법원 2022가합9887호로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고의 본소 주장 중 283,472,4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C의 반소 주장 중 합계 290,052,013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137,167,254원 + 얼음생산기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5,728,320원 + 해수생산설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62,768,760원 + 2.5톤 트럭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2,566,320원 + 5톤 트럭에 대한 임대료 채권 7,980,000원 + 대여금 채권 17,000,000원 + 구상금채권 41,370,729원 + 소송비용액상환채권 14,470,630원)을 채권을 각 인정한 사실, ③ 위 법원은 C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290,052,013원의 채권이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283,472,470원 및 상계적상일인 2022. 6. 11.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15,826,431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본소 청구를 “15,826,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2.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에서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C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2024. 7. 18. 선고한 사실, ④ 원고 및 C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비용을 납부하지 함으로써 위 법원이 2024. 8. 19.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한 사실(현재 수원고등법원 2024라10307호로 계류 중이다), ⑤ 한편, 원고는 C의 항소에 대하여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C이 2024. 8. 2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15,826,431원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5679 판결).

2) 채무초과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C이 2022. 6. 7.경 당시 시간 약 220,000,000원인 이 사건 광명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C의 소극재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C이 적극재산 22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의 소극재산인 원고에 대한 15,826,431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이 사건 광명시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채무 100,000,000원(채권최고액 기준)을 합하여도 적극재산의 가액인 2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 광명시, 시흥시, 대한민국이 이 사건 광명시 오피스텔을 압류한 사실을 근거로 C이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②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를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 있는데, C이 원고에게 공탁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점 등을 고려하면, C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명시, 시흥시, 대한민국이 이 사건 광명시 오피스텔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압류 일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이므로, 그 압류채권을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또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근거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의 취지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는 경우에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부정한 사안인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상회복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준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고, 상계적상일은 2022. 6. 11.이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는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금 283,472,470원과 그에 대하여 C이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0. 11. 12.부터 상계적상일인 2022. 6. 11.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C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되고, 원고의 채권액은 15,826,431원만이 남게 된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인인 2022. 6. 7.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원금 15,826,431원만이 존재한다.